

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대법원에 윤리감사관을 두도록 「법원조직법」(법률 제17125호, 2021. 2. 9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주요 감사사건에 대한 ‘조사개시의 필요성’과 ‘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및 회계감사(일상감사는 제외)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하고, 권고의결의 상대방에 ‘대법원 윤리감사관’을 추가함(안 제2조제1항)
- 주요 감사사건에 해당하는 법원공무원의 범위를 ‘사무관 이상’으로 확대하고, 대상사건을 ‘금품·향응 수수, 공금 횡령 등 직무관련 주요 비위행위, 성범죄 등’으로 명확히 하며, 주요 감사사건의 지정권자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추가함(안 제2조제2항)
- 윤리감사관실의 소속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으로 변경됨에 따

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6조제1항, 안 제9조)

4.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본문 중 “징계의결요구권자(이하 ‘징계청구권자등’이라 한다) 또는 법원행정처장”을 “징계의결요구권자(이하 ‘징계청구권자등’이라 한다),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”으로 하고, 제1호 중 “조사방법”을 “조사개시의 필요성·조사방법”으로 하며, 제2호 중 “법원행정처”를 “대법원”으로 하고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및 회계감사(일상감사는 제외)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서기관”을 “사무관”으로, “직무 관련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 횡령, 성범죄 등”을 “금품·향응 수수,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, 성범죄 등”으로 하고, 제2호 중 “법원행정처장”을 “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9조 중 “법원행정처”를 각각 “대법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위원회의 임무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, 그 결과를 「법관징계법」 제7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청구권자나 「법원공무원규칙」 제96조제1항에 정한 <u>징계의결요구권자(이하 ‘징계청구권자등’이라 한다)</u> 또는 <u>법원행정처장</u>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.</p> <p>1. 주요 감사사건의 <u>조사방법</u> · 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</p> <p>2. <u>법원행정처</u> 윤리감사관실의 법관에 대한 진정 · 청원(재판결과불만 등의 단순한 사안은 제외)의 처리에 관한 사항</p> <p>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② "주요 감사사건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</p>	<p>제2조(위원회의 임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징계의결요구</u> 권자(이하 ‘징계청구권자등’이라 한다), <u>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 --.</p> <p>1. ----- <u>조사개시의 필요성 · 조사방법</u>-----</p> <p>2. <u>대법원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 사무감사 및 회계감사(일상감사는 제외)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</u></p> <p>②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는 사건을 말한다.</p> <p>1. 법관 또는 <u>서기관</u> 이상 법원 공무원의 <u>직무 관련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 횡령, 성범죄</u> 등에 대한 감사사건</p> <p>2. 그 밖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 사건 중 <u>징계청구권자등이나 법원행정처장이</u>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위원장이 지명하는 <u>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</u> 소속 법관으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9조(의견 진술) 징계청구권자등이나 <u>법원행정처</u> 윤리감사관은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</p>	<p>-----.</p> <p>1. ----- <u>사무관</u> ----- ----- <u>금품·향응 수수,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, 성범죄 등</u>-----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<u>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</u>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간사) ① ----- ----- ----- <u>대법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의견 진술) ----- ----- <u>대법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<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	
연락처	(02) 3480 - 1796